붙임1.

경산대임지구 반도유보라(민간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공급위치 및 건축규모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임지구 주상복합부지 M1블럭
- 공급개요 : 지하2층~지상29층 3개동 총 268세대 중 사전청약 공급 228세대

▌공급개요

구분	주택형 (주택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전체 공급 세대수	사전청약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공동주택	84.9800	84A	84.9800	25.3900	110.3700	62.3500	172.72	97	82
	84.9600	84B	84.9600	25.7600	110.7200	62.3300	173.05	56	48
	105.4500	105	105.4500	25.9200	132.3700	77.3600	209.73	115	98
	공급세대 합계							268	228

▌분양가

- 본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최종 확정이며, 추정분양가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시 안내 예정

▌기관별 배정세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 85㎡ 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구분		84A	84B	계
장애인	경상북도	1	1	2
	대구광역시	2	-	2
국가유공자 등		1	1	2
장기복무제대군인		1	-	1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2
중소기업근로자		2	1	3
계		8	4	12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등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기관 추천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조 제5항 및 「경산시 고시」제 2021-23호에 의거 최초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전체 마감 시 기타 경북/대구광역시 기관추천 대상자의 배정물량은 없습니다.

▌분양일정(예정)

구분	일자(예정)	참고사항
사전당첨자 모집공고	2022.10.14.(금)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 미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022.10.24.(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신청
사전당첨자발표	2022.11.02.(수)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사전당첨자 계약체결	2022.11.14.(월) ~2022.11.16.(수)	당사 현장접수처(경산시 대학로32길 1, 2층)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경산대임지구 반도유보라'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접수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주택소유 자격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 선정제한(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table>
<tr><td></td><td>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경산시 및 경상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td></tr>
<tr><td>신청자격</td><td>•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 세대구성원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추천기관
<table>
<tr><th>구분</th><th>관련법규</th><th>해당기관</th></tr>
<tr><td>장애인</td><td>「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td><td>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td></tr>
<tr><td>국가유공자 등</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등</td><td>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td>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td></tr>
<tr><td>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방부 국군복지단</td></tr>
<tr><td>중소기업근로자</td><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td></tr>
</table></td></tr>
</table>

Ⅲ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사전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 선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넥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현장접수처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지정 장소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사업주체 지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 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공시행 사전청약은 신청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사전당첨자는 부적격 사전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사전공급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사전당첨 및 사전공급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등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공시행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

Ⅳ 현장접수처 위치 및 분양문의

▌현장접수처 위치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32길 1, 2층
- 전화번호 : 1800-0531